



제358회 임시회
2017. 8. 29.(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한범 의원 외 6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7년 08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08월 29일

3. 제안이유

피감사·조사기관에 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시키고, 행정사무감사·조사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나. 피감사·조사 기관에 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참고인의 증인 전환·선서 신설 및 선서에

관한 준용 법률 변경(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장래 설치 가능한 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상위법령 위반 여부

-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증인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는 법률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함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상호간에 체계적합성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피감사 및 조사기관에 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시키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합의제행정기관

[붙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합의제행정기관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 (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79조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법 제116조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적 성격

가. 지방자치법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합의제 행정기관을 조직하도록 한 것(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그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속한다거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 합의제 행정기관의 예

- 가. 광주, 세종, 충남,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다. 제주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도지사의 재의요구로 미설치)
- 마. 경찰위원회(일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권을 주장하면서 그 설치를 주장하고 있음)

○ 결어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은 마땅히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이 됨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도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을 피감사 및 조사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해석됨